



보건복지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1. 관련근거

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8조

나.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및 제5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

2. 「2022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및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에서는 **자체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공공보건의료계획을 취합·검토 후 함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작성대상 : (시행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 9개 기관, 시·도 17개 기관
(의료계획) 공공의료기관 230개소

나. 제출처 및 작성 문의 : 각 지침 행정사항 참조

다. 제출기한 : 2022년 3월 4일

※ (중앙행정기관 및 각 시·도) 소관 공공보건의료기관이 작성대상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2022년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안내.
2. 2022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안내.
3. 2022년 주요 시책 추진계획(별송). 끝.

보건복지부장관

수신자 고용노동부장관(산재보상정책과장), 교육부장관(국립대학정책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원자력연구개발과장), 국가보훈처장(보훈의료과장), 국방부장관(보건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자동차운행보험과장), 법무부장관(치료처우과장), 경찰청장(복지정책담당관), 서울특별시(보건의료정책과장), 인천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경기도지사(공공의료과장), 강원도지사(공공의료과장), 충청북도지사(보건정책과장), 충청남도지사(보건정책과장), 세종특별자치시(보건정책과장), 대전광역시(건강보건과장), 대구광역시(보건의료정책과장), 경상북도지사(감염병관리과장), 경상남도지사(보건행정과장), 부산광역시(건강정책과장), 전라남도지사(건강증진과장), 전라북도지사(보건의료과장), 광주광역시(건강정책과장), 울산광역시(시민건강과장), 제주특별자치도지사(보건건강위생과장), 근로복지공단이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질병정책과장, 보험정책과장, 장애인정책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 국립암센터원장, 국립정신건강센터장, 국립나주병원장, 국립부곡병원장, 국립춘천병원장, 국립공주병원장, 국립소록도병원장, 국립재활원장, 국립마산병원장, 국립목포병원장, 국립중앙의료원장, 대한적십자사회장,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민간전문가 강희찬 공공의료과장 전결 2022. 1. 13. 신옥수

협조자

시행 공공의료과-240 (2022. 1. 13.) 접수

우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어진동)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 / <http://www.mohw.go.kr>

전화번호 044-202-2543 팩스번호 044-202-3929 / redcross@korea.kr / 대국민 공개

위험할 땐 119, 힘겨울 땐 129